

문서번호	건축과-14147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3.06.26.
공개여부	공개
방침번호	동작구청장 방침 제(358)호

★ 주무관	건축관리장	건축과장	도시관리장	부구청장	구청장
협조	주택과장				
	도시개발과장				

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운용 계획

- ◇ 목 적 : 우리구 특성에 맞는 「녹색건축물 설계 기준」을 수립·운영
- ◇ 적용대상 : “에너지절약계획서” 제출대상으로써 건축허가 및 심의를 신청하는 건축물
- ◇ 기준구성
 - 내 용 : 녹색건축물 설계를 위한 기본방향 제시
 - 구 성 : 총4개 분야
 - 건축물의 에너지소비, 건축물 성능인증, 에너지절감기술, 신·재생에너지설비
- ◇ 시행계획 : 방침일로부터 시행
 - ※녹색건축물 : 에너지이용 효율 및 신·재생에너지의 사용비율이 높고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건축물(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)

도시관리국
(건축과)

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운용 계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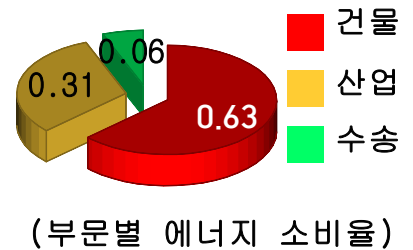
고유가와 기후변화의 시대에 직면하여 에너지 절감에 대한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임. 따라서 우리구 현황에 맞는 「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을 수립, 시행하여 에너지 저소비형·친환경건축물 활성화에 앞장서고자 함

I 추진 배경

건축물의 에너지수요 절감 필요성 대두

○ 서울시 부문별 에너지소비현황 : 건축물 분야 에너지 소비 전체 60% 이상

구 분	계	건물	산업	수송
소비량 (천toe)	15,718	9,849	1,023	4,846



친환경 건축물 관련 제도 신설·강화

- 「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」 제정·시행('13. 2.23)
- 「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」(국토해양부 고시)

II 추진 근거

- 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 제정·시행('13. 4. 1)
- 2013년 서울시 인센티브사업 「원전하나 줄이기」추진[환경과-7860(2013. 4.12)]
- 2013년 「제8회 동작구 건축위원회」자문[건축과-13900(2013. 6.24)]
 - 안건 :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(안)
 - 결과 : 의견제시(2안 채택)

II 추진 계획

□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 수립·운영

- 「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」을 우리구 실정에 맞게 운용하여 에너지 저소비형·친환경 건축물 활성화에 기여

※ 타구 자체기준 수립현황(2013 신설)

구 분	자치구명	비고
서울시와 동일	중구, 성동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존방침 활용 : 성북, 종로, 양천 • 자체기준 수립 검토중 : 16개구
변경(완화)	은평, 영등포, 관악	

○ 동작구 건축위원회 자문결과(2안채택) 내용

- 서울시 기준중 중소형건축물 건축물에까지 일괄 적용하는 것은 불합리
- 서울시 기준중 신·재생에너지설비 관련항목은 에너지소비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대규모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하고
- 건축물에너지성능지표(EPI) 점수에 대하여는 서울시 기준과 법적기준 사이의 절충안 선택

□ 운용방법

- 적용대상 :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대상 건축물

현행	2013. 9. 1 이후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아파트, 연립주택 ▶ 연구소, 업무시설 - 연면적 3,000㎡이상 ▶ 기숙사, 병원, 유스호스텔, 숙박시설 - 연면적 2,000㎡이상 ▶ 일반목욕탕, 실내수영장 - 연면적 500㎡이상 ▶ 도매시장, 소매시장, 상점 - 연면적 3,000㎡이상 ▶ 공연장, 집회장, 관람장, 학교 - 연면적 10,000㎡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용도 구분없이 연면적 500㎡ 이상 모든 건축물 (단독주택 제외)

○ 운용절차

구 분	내 용	자체평가서 검토 담당자
건축허가 신청	설계기준 적용 자체평가서 제출	건축 분야 : 인허가팀 전기기계분야 : 영선팀
서류 검토	자체 평가서 검토(담당자)	
사용승인	사용승인 신청시 감리자 이행확인서 제출	

※붙임 4 「가이드라인적용 자체평가서」 참조

□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 기준

분 야	구 분	법적기준	녹색 설계기준	서울시 기준	
건축물 에너지소비 총량제	주거용 ·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	없음	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190 kwh/m ² ·y 미만	
	비 주거용 · 연면적 3,000m ² 이상 업무시설	자율		280 kwh/m ² ·y 미만	
성능인증	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인증 · 심의대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· 심의대상 연면적 3,000m ² 이상 일반건축물	자율		70점 이상	2등급 이상
	녹색건축 인증 · 심의대상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· 심의대상 연면적 3,000m ² 이상 일반건축물	자율	우수(그린2등급) 이상		
에너지성능지표 평점합계 (EPI)		65점 이상 (시행 2013.9.1) ※ 현행 60점 이상		86점 이상 ※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허용 (붙임1)	
절감기술	단열성능 (평균 열관류율)	외벽 (창,문 포함)	주거	0.66W/m ² ·K미만	0.46W/m ² ·K미만
			비주거	1.18W/m ² ·K미만	0.79W/m ² ·K미만
		지붕		0.18W/m ² ·K미만	0.14W/m ² ·K미만
		바닥		0.29W/m ² ·K미만	0.20W/m ² ·K미만
	문 및 창호의 기밀성 확보		자율		2등급이상
	창 면적 비율제한	주거용	없음	서울시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	벽면율 50% 이상
		비주거용	없음		벽면율 40% 이상
	LED 조명기기 전력량 비율	주거용	자율		조명설비 전력량의 5%이상
비주거용		자율	조명설비 전력량의 10%이상		
고효율 변압기 설치		자율		용도별 기준부하율 적용 (붙임2)	
신재생 에너지설비	주거용 ·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	없음		신재생에너지공급율 1%이상(붙임3)	
	비주거용 · 일반건축물 연면적 3,000m ² 이상	없음		신재생에너지공급율 5%이상(붙임3)	

일반사항

- 동(하)절기 전력피크 부하를 줄일 수 있는 냉난방기기 설치
- 연면적 3,000m²이상 일반건축물에 에너지사용량 표출장치 설치
- 지하주차장 등 상시조명(24시간)이 필요한 장소의 LED조명기구 설치
- 피난유도등 및 안내표시등 등 각종 표시램프류는 LED로 설치
- 공동주택 스마트 계량기 설치(에너지 사용량 모니터링)
- 판매시설 등 대규모 주차장은 주차자동안내 시스템 설치

Ⅲ 기 대 효 과

- 환경친화적·에너지저소비형 녹색건축물을 계획하기 위한 기본방향 및 기준 제시
- 설계기준을 건축물 계획 단계에서부터 고려하고 그 이행확인 의무화하여 에너지 절감형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내실있게 추진
- 2013 자치구 인센티브 사업 「원전하나 줄이기」 선도

Ⅳ 행 정 사 항

- 방침일 이후 허가 및 심의 신청하는 건축물에 적용
- 동작구 설계 기준 시행 홍보(미디어보드, 동작구 소식지 등)

붙 임 1. 설비별 보상점수 가점표.

2. 고효율 변압기 관련 용도별 기준부하율.

3. 신·재생에너지 설비 공급율 산정방법.

4. 동작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안(건축위원회 자문).

5. 설계기준 적용 자체평가서 1부. 끝.